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”을 “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부칙 제1조(유효기간 등) 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)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(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)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(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) 비율(이하 “원화예대율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(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. 다만, 2020년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. : 100분의 100 이하

가. ~ 라. (생 략)

4. • 5. (생략)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